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미실적을 이유로 등록 취소 시 ‘정당한 사유’ 유무 고려〉
■ 정부(의안번호 제2204746호 · 제2204747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미실적을 이유로 등록 취소 시 ‘정당한 사유’ 유무 고려 ..	3

I. 제안경위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정부

나. 제 안 일 : 2024. 10. 17.

다. 회 부 일 : 2024. 10. 18.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정부

나. 제 안 일 : 2024. 10. 17.

다. 회 부 일 : 2024. 10.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

당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미실적 이유로 등록취소 시 ‘정당한 사유’ 유무 고려

- 개정안들은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금융위원회 등 행정청이 영업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② 시 · 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 ¹⁾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의4. (생략) 3. <u>6개월 이상</u>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 8. (생략)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② -- ----- ----- -----. ----- -----. 1. ~ 2의4. (현행과 같음) 3. <u>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u> ---- ----- 4. ~ 8. (현행과 같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9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②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u>6개월 이상</u>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거나 법인의 합병·파산·폐업 등	제49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②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법인의 합병·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u> <u>영업을 끝내거나</u> <u>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u>

현행	개정안
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6.·7. (생략)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6.·7. (현행과 같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²⁾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³⁾는 각각 대부(중개)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⁴⁾의 등록취소 사유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들은 미실적을 이유로 영업자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여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 참고로, 개정안들은 범정부 차원의 ‘영업취소사유 합리화를 위한 법령

-
- 1)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 2의4. (생략)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이하 생략)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②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7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원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거나 법인의 합병·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이하 생략)
4)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3호).

정비'를 위해 제출된 것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을 포함하여 유사
취지 법률안 총 25건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 현행법에 따른 영업자 등록취소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는 침
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제재 규정의 명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
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음.⁵⁾

- 금융위원회는 영업자가营业을 지속하고자 함에도 불가피하게 영업실
적이 없는 경우(시스템 개편,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등)가 있을 수 있
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영업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5) < 유사 입법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문업자, 투
자일임업자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
로 말소할 수 있다.

2.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
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
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
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인
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문 의 처
02)6788-5113